

**법률 제11465호**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2012년 6월 1일



### 1. 제안이유

음식물류 폐기물과 가축분뇨를 함께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한 검사 제도를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음식물류 폐기물과 가축분뇨를 함께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 행정절차 간소화(안 제32조제2항 신설)

- 1) 음식물류 폐기물과 가축분뇨를 함께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이 법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설치 승인, 허가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불편이 있음
- 2) 음식물류 폐기물과 가축분뇨를 함께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이 법에 따른 설치 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설치 승인 또는 가축분뇨처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함

#### 나. 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한 검사제도 도입(안 제50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신설)

- 1) 폐기물매립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폐쇄하려는 경우 단순히 신고 절차만 두고 있어, 사용이 종료된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
- 2) 폐기물매립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폐쇄하려면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도록 하고, 사후관리 대상인 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재산 또는 주변환경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공고 2012-0330**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2년 6월 18일

### 1. 제안이유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구 1인당 장기 재활용 목표량 및 인구 1인당 연도별 재활용 목표량을 정하여 이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의무생산자의 재활용 의무생산량을 정하고, 폐전기·폐전자제품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의무생산자 등은 기후·생태계 변화 유발물질을 회수하여 분리·보관 및 처리하도록 하며, 재활용 부과금 및 회수 부과금 체납 시 징수하는 가산금을 그 납부 시기에 따라 감면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책무(안 제4조 및 제5조)

-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 기능자원의 분리수거를 확대하고 회수체계를 개선하도록 하고, 전기·전자제품 등의 제조·수입업자는 재활용 기술을 개발하고 폐기물의 수거와 재활용에 노력하도록 하며, 전기·전자제품 등을 판매하는 자는 폐전기·폐전자제품의 회수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고, 재활용사업자는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이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하는 등 폐전기·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책무를 명확하게 정함

#### 나. 폐전기 · 폐전자제품 재활용목표관리제(안 제16조)

- 1) 현재 전기 · 전자제품의 재활용 의무량을 매년 품목별로 산정하여 부과하고 있으나,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전기 · 전자제품의 품목을 반영하고, 장기적인 재활용 목표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2) 인구 1인당 장기 재활용 목표량을 5년마다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재활용 목표량을 매년 정하여 이를 근거로 전기 · 전자 제품 제조 · 수입업체별로 재활용 의무량을 부과하되, 재활용 가치가 높은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제품별 재활용 의무량을 부과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재활용 의무이행을 도모함

#### 다. 기후 · 생태계변화 유발물질 관리 강화(안 제16조의3 신설)

- 1) 현재 폐자동차에서 발생하는 기후 · 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는 제도는 시행되고 있으나, 폐전기 · 폐전자제품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후 · 생태계변화 유발물질에 대한 회수 및 처리체계가 정비되어 있지 않음
- 2) 전기 · 전자제품 재활용 의무생산자와 회수 및 재활용 의무를 위탁받은 자는 폐전기 · 폐전자제품에서 발생하는 기후 · 생태계변화 유발 물질을 회수하여 분리 · 보관 및 처리하도록 함

#### 라. 재활용부과금 등에 대한 가산금 감면(안 제18조의3)

전기 · 전자제품의 재활용 부과금 및 전기 · 전자제품의 회수 부과금을 체납한 자에게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되 납부기간 경과 후 1주일 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함

공고 2012-0318

## 소음 · 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2년 6월 15일



#### 1. 개정이유

운행차 중 소음 수시점검이 면제되는 차량에 관한 법률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인증시험 대행기관의 과정금 처분 신설, 인증시험 대행기관 및 확인검사 대행자, 소음도 검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전 의견진술 기회 확대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 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가. 제작자 소음 인증시험대행기관의 과정금 처분(안 제31조의4 신설)

- 1) 인증시험 대행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으로 인증시험 지연 등 이용자의 불편이 초래될 수 있어 이용자의 불편 해소와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대체 방안 마련이 필요함
- 2) 인증시험 대행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할 경우 이용자 등의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과정금 처분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 나. 운행차의 수시점검 면제 근거 마련(안 제36조제1항 단서 신설)

- 1) 법률 위임 근거가 없는 운행차 수시점검의 면제(소음 · 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대한 법률 위임 근거 마련이 필요함
- 2) 소음저감장치 및 소음방지시설 등을 설치 또는 교체하거나 긴급한 용도로 사용하는 운행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수시 점검을 면제할 있도록 함

##### 다. 업무정지 처분 시 청문 절차 규정(안 제51조)

- 1) 인증시험 대행기관 및 확인검사 대행자, 소음도 검사기관에 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시 의견진술의 기회를 보장해 줄 필요가 있음
- 2) 인증시험 대행기관 및 확인검사 대행자, 소음도 검사기관에 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시 청문절차를 시행하도록 함